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4
----------	-----

제출년월일 : 2000. 5.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복지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 경기도 기획 12200-298(2000. 3. 8)에 의거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 골자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안 제2조)

- 총 정 원 : 780명 → 785명 (증 5명)
- 집행기관 : 762명 → 767명 (증 5명)
- 의회사무기구 : 18명 → 18명

나. 부칙중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안, 부칙 제2조)

- [표1]의 정원총수 828명 → 833명
 - 집행기관의 정원 810명 → 815명
- [표2]의 정원총수 782명 → 787명
 - 집행기관의 정원 764명 → 769명

※ 사회복지직 정원 승인 내역

- 사회복지 9급 : 5명 순증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85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6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제3조 (정원관리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표1]을, 2001년 6월 30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83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표2]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78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76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제3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조례 제2조의 시행으로 인해 감축되는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941-2144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이 순 용
	시 정 담 당	김 규 범
	담 당 자	김 영 준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u>시에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80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u>	제2조(정원의 총수) <u>시에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85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u>
1. 집행기관의 정원 : <u>762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767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제3조(생략)	제3조(생략)